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대상지구 선정 업무 소홀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남구

훈계대상자 광주광역시 남구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3. 1. 18.부터 2014. 7. 21.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과에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 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2014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 추진 현황

지원대상 농가수	집단화 최소면적	사업예산(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110농가 (남구 27농가, 광산구 83농가)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155,189	108,630	46,559	-	- 직불금(농업인)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경관보전활동비(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15만원/ha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자로 농업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경관보전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고,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는 농지전용을 거친 농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는 경관보전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경관보전 활동에 관한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한 후 보조금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협약이행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후 경관보전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4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대상 마을의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 Agrix(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와 사업신청 농지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3월31일까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관보전직불

제 대상지구 사업신청서를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별지 제7호 서식)’의 선정요령에 따라 경관전문가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대상지구를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대상지구를 평가한 후 시·도지사에게 추천(4월2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대상지구를 선정하는 주관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와 붙임 자료인 참여자 대상농지 현황, 경관보전직불제 참여신청서,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 농지 위치도 등을 기초로 하여 반드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대상지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국장·과장 등 상급자에게 사업대상지구 선정 보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Agrix에 입력해야 되며 업무담당자가 혼자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대상지구를 선정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4년도 동계 밀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신규 사업대상지구를 선정하면서 ○○동(○○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참고하여 업무담당자가 검토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할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¹⁾에 따른 7개 항목 배점표에 의한 평가(100점 만점에 65점 획득)만 실시한 후 Agrix에 입력 완료 처리하였다.

그 결과 신규 사업대상지구 선정에 적정한 분석평가 및 상급자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대상지구로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대상지

1) (별지 제7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지원대상지구 선정기준 주요 점검항목 배점기준(7개 항목, 100점 만점)
- 미관성(20점), 창의성(20점), 집단화(15점), 성취도(15점), 접근성(10점), 연계성(10점), 계획성(10점)

구 선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위 사업 업무담당자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의 취지가 유희농지에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심어 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타 직불제 사업과 동일하게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으로 잘못 이해하여 마을경관보전협약서²⁾에서 이행하기로 한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경관보전직불금만 정상적으로 지원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신규 사업대상지구를 선정할 경우에는 서류 심사, 현지실사, 평가 등 선정 절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상급자 보고 체계를 유지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 2013.10.1. 남구청장과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위원장 ○○○, 참여농가 27농가)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6월 1일까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협약 체결, 제1조 제6항 제4호에서 마을경관가꾸기를 위한 경관보전활동을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시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를 ○○동에 제출하였다.